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1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1 장 총칙	사업주 등의 의무	법 5 조 <개정 2020. 5. 26.>	다음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근로자의 의무	법 6 조	산업재해 예방기준 준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순응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법 10 조 규칙 7 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1)대상: 상시 근로자 500 명 이상 사업장 2)제출내용: 통합산업재해조사표 3)제출시한: 익년 4 월 30 일	□ 해당 없음 ■ 통합산업재해조사표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이사회 보고 승인 (안전보건 계획)	법 14 조 영 13 조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비용, 시설, 인원 등을 포함)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1)상시근로자 500 인 이상 주식회사 2)시공능력: 순위/상위 1 천위 이내 건설회사	□ 해당 없음 ■ 이사회 보고/승인 근거기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15 조 규칙 9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상시 근로자 50 인 이상 1. 토사석 광업 2.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 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류,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300 인 이상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20 억 이상 : 건설업 - 상시 근로자 100 인 이상 : 상기 사업을 제외한 사업	□ 해당 없음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관리감독자	법 16 조 영 15 조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선임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안전관리자	법 17 조 영 16,17,18,19 조 [별표 3] 규칙 12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1)건설업 : 공사금액 50 억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 억 이상) (1 명 ↑), 공사금액 800 억 이상(2 명 ↑) 2)제조업/기타 : 50 인 이상(1 명 ↑), 500 인 이상(2 명 ↑)	□ 해당 없음 □ 자체선임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보건관리자	법 18 조 영 21,22,23 조 [별표 5] 규칙 12	보건관리자 선임,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1)건설업 : 공사금액 800 억 이상(1 명 ↑) 2)제조업/기타 : 50 인 이상(1 명 ↑)	□ 해당 없음 □ 자체선임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반영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2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19 조 영 24,25,26 규칙 12 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1)인원 : 상시근로자 20 명 이상 50 명 미만인 사업장 2)업종 :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해당 없음 ☐ 자체선임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제 20 조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도조언에 따른 적절한 조치 실시																														
	산업보건의	법 22 조 영 29,30,31 조 고용노동부예규 제 161 호	산업보건의 선임,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1)상시근로자 : 50 인 이상(1 명↑) ☞외부에서 위촉하거나,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해당 없음 ☐ 자체선임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 24 조 영 34~39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1 회/3 개월) 1)상시근로자: 50 인 이상(제조업 등), 300 인 이상(농업/어업/서비스) 2)건설업: 공사금액 120 억원 이상 -회의록작성,의결사항 근로자에게 공지	☐ 해당 없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침서 에 반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법 25,26,27,28 조 영 25 조 규칙 25 조 [별표 2,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운영 및 준수 1)상시근로자 100 인 이상 사업장(제조업,건설업) 2)상시근로자 300 인 이상 사업장(제조업,건설업 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제.개정 및 근로자에게 공지	☐ 해당 없음 ☒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법 29 조 규칙 26 조 [별표 4,5]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개정 2023. 9. 27.>																															
			근로자 교육 <table><tr><th>교육과정</th><th colspan="2">교육 대상</th><th>교육 시간</th></tr><tr><td rowspan="3">정기교육</td><td colspan="2">사무직 종사 근로자</td><td>매 반기 6 시간 이상</td></tr><tr><td rowspan="2">그 밖의 근로자</td><td>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td><td>매 반기 6 시간 이상</td></tr><tr><td>판매업무 직접종사 근로자와외 근로자</td><td>매 반기 12 시간 이상</td></tr><tr><td rowspan="3">채용 시 교육</td><td colspan="2">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td><td>1 시간 이상</td></tr><tr><td colspan="2">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초과 1 개월이하인 기간제근로자</td><td>4 시간 이상</td></tr><tr><td colspan="2">그 밖의 근로자</td><td>8 시간 이상</td></tr><tr><td rowspan="2">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td><td colspan="2">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td><td>1 시간 이상</td></tr><tr><td colspan="2">그 밖의 근로자</td><td>2 시간 이상</td></tr></table>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 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 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종사 근로자와외 근로자	매 반기 12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 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초과 1 개월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 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 시간 이상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 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 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종사 근로자와외 근로자	매 반기 12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 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초과 1 개월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 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 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 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2 시간 이상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3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법 29 조 규칙 26 조 [별표 4,5]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근로자 교육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 절차서에 반영 -교육훈련보고서	
			특별교육	교육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 1 호 라목 (39 호 제외)		2 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 1 호 라목 제 39 호 타워크레인 신호 작업자		8 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1 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 1 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자		▪16 시간 이상: 최초 4 시간, 3개월 내 12 시간 가능 ▪2 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법 29 조 규칙 26 조 [별표 4,5]	<개정 2023. 9. 27.>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과정	교육 시간					
			정기교육	연간 16 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8 시간 이상						
특별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 시간 이상						
			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 시간 이상 실시하고, 12 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 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의 면제 등	법 30 조 규칙 27 조	교육훈련 면제 기준(규칙 27 조) <개정: 2025.05.30>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 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 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② 영 제 16 조 및 제 20 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 11 조제 3 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 26 조제 1 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반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 30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 제 1 호 또는 제 1 호의 2 에서 정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교육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 148 조제 1 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37 조제 4 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 1 호가목의 근로자 정기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 1 호의 2 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 5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 1 호나목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 1 호의 2 나목의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3. 별표 5 제 1 호라목제 33 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 138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경우: 별표 4 제 1 호라목의 근로자 특별교육시간(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별표 4 제 1 호의 2 라목의 관리감독자 특별교육시간을 말한다)에서 면제 ④ 법 제 30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 1 호의 2 가목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1. 법 제 3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 40 조제 3 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 3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 3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 98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⑤ 사업주는 법 제 30 조제 2 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력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2025. 10. 1.>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4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 「통계법」 제 22 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 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 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 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 분의 50 이상 2. 별표 5 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 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 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 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 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법 31 조 규칙 28 조 [별표 4,5]	건설업의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table><tr><td>교육과정</td><td>교육대상</td><td>교육시간</td><td>교육내용</td></tr><tr><td>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td><td>건설 일용근로자</td><td>4 시간 이상</td><td>시행규칙 [별표 5] 참조</td></tr></table>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 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 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32 조 규칙 29,30 조 [별표 4,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table><tr><th rowspan="2">교육대상</th><th colspan="2">교육시간</th></tr><tr><th>신규교육</th><th>보수교육</th></tr><tr><td>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td><td>6시간 이상</td><td>6시간 이상</td></tr><tr><td>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td><td>34시간 이상</td><td>24시간 이상</td></tr><tr><td>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td><td>34시간 이상</td><td>24시간 이상</td></tr><tr><td>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td><td>34시간 이상</td><td>24시간 이상</td></tr><tr><td>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td><td>34시간 이상</td><td>24시간 이상</td></tr><tr><td>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td><td>-</td><td>8시간 이상</td></tr><tr><td>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td><td>34시간 이상</td><td>24시간 이상</td></tr></table>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교육훈련 절차서에 반영 -교육훈련수료증(교육전문기관)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법 32 조 규칙 29,30 조 [별표 4,5]	■교육훈련 면제 기준 1(규칙 30 조①항): 신규교육 면제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20~50 인 사업장) 2. 영 별표 4 제 6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 7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훈련 면제 기준 1(규칙 30 조②항): 보수교육 면제 영 별표 4 제 8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0 조제 3 항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 2 호 또는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 29 조제 2 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 4 장 유해위험방지 조치	법령요지 등의 게시 등	법 34 조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 게시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법 35 조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 75 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 47 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 49 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 64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 110 조제 1 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시행일 : 2021. 1. 16.]			-요청 시 대응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토의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5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6. 제 125 조제 1 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	법 36 조 규칙 37	▪ 위험성평가 실시를 실시하고, 실시내용 및 결과기록을 3 년간 유지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53 호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반영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법 37 조 규칙 38	유해·위험 장소·시설에 안전보건표지 부착(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 등);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안전보건표지관리 지침서에 반영	
	안전 조치	법 38 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항목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실시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각 장소에 안전보건수칙 부착 -각 장소에 안전보건표지 부착 -관련 절차 작성 운영		
	보건 조치	법 39 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항목에 대한 건강장해예방조치 실시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법 40 조	상기 법 38, 39 조와 관련된 안전보건상 절차 준수; 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준수여부 점검 실시 -점검표 -교육일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법 42 조 영 42 규칙 42~46 조	-전기 계약용량이 300 킬로와트 이상으로써, 다음 업종은 관련 시설 설치. 이전. 구조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 및 심사 수심 1)금속가공제품제조업, 2)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3)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식료품 제조업 6)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기타 제품 제조업 9)1 차 금속 제조업 10)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다음 시설 설치.이전.구조변경 시 상기와 동일한 조치 실시 1)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화학설비 3)건조설비 4)가스집합 용접장치 5)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 환기·배기를 위한 설비 -다음의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가. 지상높이가 31 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 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 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 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 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4. 터널의 건설 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 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해당 없음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6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4 장 유해위험방지 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법 43 조 규칙 46,48 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 4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 개월 이내마다 법 제 43 조제 1 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42 조제 6 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 해당 없음 ☐ 공단으로부터 확인 수심 -확인결과통지서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법 44 조 영 43,44,45 조 [별표 13]	-다음의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구조변경 하거나, 유해.위험 물질을 영[별표 13]의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관서에 “제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 대상사업 :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배합은 제외)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영[별표 13]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때,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실시	☒ 해당 없음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법 45 조 규칙 52 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심(고용노동관서) 및 심사결과 접수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보관	☒ 해당 없음 ☐ 공정안전보고서 보관관리 (심사결과 접수 후)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법 46 조 규칙 53,54 조	-공정안전보고서에 규정된 내용 준수 -다음의 시기별로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1. 신규로 설치될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 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한 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 개월 이내 3.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 개월 이내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 개월 이내 -고용노동관서장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 년이 지난 날부터 2 년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평가” 실시 -고용노동관서장은 “이행상태평가” 후 4 년마다 이행상태평가 실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년 또는 2 년마다 이행상태평가 실시 1. 이행상태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상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 155 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제 50 조제 1 항제 3 호사목에 따른 변경요소 관리계획 미준수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해당 없음 ☐ 확인 수심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7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4 장 유해위험방지 조치	안전보건진단(명령)	법 47 조 영 46 조,[별표 14] 규칙 55,56,57 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명할 수 있음. 1)중대재해발생 사업장 2)안전보건계획수립,시행명령 받은 사업장 3)추락,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진단의뢰, 진단을 의뢰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사업주는 진단에 협조,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허용	■안전보건진단 명령 접수 시 이에 적극 협조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49 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50 조)	법 49,50 조 영 49,50 조 규칙 60,61,62 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을 명할 수 있음.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 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다만, 다음의 경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을 명할 수 있음.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 배 이상인 사업장 2. 상기 2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 명(상시근로자 1 천명 이상은 3 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사업주는 개선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회의를 거쳐야 함.	■명령 발생 시 대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서 -[종합.안전.보건]진단명령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법 51 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급박한 위험 : 대형화재발생 시/지진 등 천재지변 발생 시/기타 폭발/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위험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제 4 장 유해위험방지 조치	근로자의 작업중지	법 52 조	-근로자는 상기 법 51 조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우려, 중대재해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관리감독자는 보고 접수 후,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는 상기 대피 사유가 타당할 경우, 대피한 근로자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법 54 조 규칙 67 조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 실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 시, 지체없이 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전화,팩스 등)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법 57 조 규칙 72,73 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다음 기록·보존 다만, 산업재해조사표 사본보존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	■재해조사 및 보고 절차서에 반영 -재해조사보고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8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 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발생/3 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 발생 시, 다음의 조치 실시 1. 산업재해가 발생 1 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2.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제출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 5 장 도급 시 산업재 해 예방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법 58 조 규칙 74,75 조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게 도급작업금지 1. 도급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허용 가능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해당 없음 □ 도급업체안전관리 지침서에 반영			
	도급의 승인	법 59 조 영 51 조 규칙 78 조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유해·위험한 작업 중 급성독성/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다음에 정하는 작업 도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량비율 1%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 2.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해당 없음 □ 도급업체안전관리 지침서에 반영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법 60 조	법제 58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 5 항 또는 제 6 항(제 59 조 제 2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 59 조제 1 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다.	■ 해당 없음 □ 도급업체안전관리 지침서에 반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62 조 영 52,53 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계수급인 포함,상시근로자 100 명 이상 다만, 선박/보트 건조업, 1 차금속 제조업/토사석 광업은 50 명 이상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 포함, 공사 총공사금액이 20 억원 이상인 건설업	■ 해당 없음 □ 도급업체안전관리 지침서에 반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63 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자신/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시설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해당 없음 □ 도급업체안전관리 지침서에 반영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9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64 조 규칙 79,80,81,82 조	①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시, 다음사항 이행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1 회/매월)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 36 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작업장 순회점검(1 회/2 일)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채용/작업변경)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지진 등이 발생 시 6. 위생시설(휴게시설/세면·목욕시설/세탁시설/탈의시설/수면시설) 설치를 위한 장소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 7 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흔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다음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1. 화재·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7.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8.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9.] ②도급인/관계수급인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1.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 회/2 개월 2. 기타 : 1 회/분기	■ 해당 없음 □ 도급업체안전관리 지침서에 반영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법 65 조 영 54 조 규칙 83,84,조	①도급인은 해당 작업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문서로 제공 ■ 대상작업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 1 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제공 정보/문서(규칙 83 조) 1. 안전보건규칙 별표 7 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2.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 시, 필요한 조치내용	■ 해당 없음 □ 도급업체안전관리 지침서에 반영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10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법 66 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 시정조치 요구 가능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순응/협조	■ 해당 없음 □ 필요시 시정조치 요구																									
제 6 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	법 80 조 영 70 조 규칙 98,99 조	①동력으로 작동하는 다음설비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금지 <table><tr><th>대상설비</th><th>방호조치</th></tr><tr><td>예초기</td><td>날접촉 예방장치</td></tr><tr><td>원심기</td><td>회전체 접촉 예방장치</td></tr><tr><td>공기압축기</td><td>압력방출장치</td></tr><tr><td>금속절단기</td><td>날접촉 예방장치</td></tr><tr><td>지게차</td><td>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td></tr><tr><td>포장기계(진공포장기,래핑기)</td><td>구동부 방호 연동장치</td></tr></table> ②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금지 <table><tr><th>대상설비</th><th>방호조치</th></tr><tr><td>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td><td>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td></tr><tr><td>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td><td>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td></tr><tr><td>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td><td>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td></tr></table>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방호조치 해체 시, 다음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시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대상설비	방호조치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래핑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대상설비	방호조치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해당 없음 ■유해위험기계기구 절차 수립 운영 1)필요한 방호조치 실시 2)안전인증 적격품 구매 3)주기적 점검 실시			
대상설비	방호조치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래핑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대상설비	방호조치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안전인증 및 인증표시	법 84,85,조 영 74 규칙 107,108,109, 114 등	- 다음의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해당 없음 ■유해위험기계기구관리 지침서에 반영 ■의무안전인증 적격품 구매 ■안전인증표시부착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11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 6 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안전인증 및 인증표시	법 84,85,조 영 74 규칙 107,108,109, 114 등	- 다음의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자 또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자. 곤돌라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유해위험기계기구관리 지침서에 반영 ■의무안전인증 적격품 구매 ■안전인증표시부착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법 87 조 규칙 111 조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금지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기준 준수			
	자율안전확인 및 확인표시	법 89,90,91 조 영 77 조 규칙 119~121 조	-다음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기준에 맞는 지 "자율안전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변경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동근톱,대패,루타기,띠톱,모떼기 기계만 해당) 차. 인쇄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동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유해위험기계기구관리 지침서에 반영 ■자율안전확인 적격품 구매 ■자율안전확인 표시부착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12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6 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법 92 조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금지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기준 준수			
	안전검사	법 93,94,95 조 영 78 조 규칙 124~127 조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 검사(안전검사기관) 또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검사(지정검사기관, 자체)를 주기적으로 실시 1) 대상: 1.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 및 곤돌라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2)검사주기: 최초 3년,정기 매 2년 단, 자율안전검사주기는 상기 주기의 1/2 로 실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이를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에 부착 -다음 사용 금지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	□해당 없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 실시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 른 안전검사	법 98,99 조 규칙 130~132 조					
제 7 장 유해·위험물질 에 대한 조치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법 107 조 영 84 조 규칙 145,146 조	사업주는 다음물질에 대해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 1. 6가크롬 화합물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 3. 니켈 화합물 4. 니켈카르보닐 5. 디메틸포름아미드 6. 디클로로메탄 7. 1,2-디클로로프로판 8.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9. 메탄올 10. 메틸렌 비스 11. 베릴륨 12. 벤젠 13. 1,3-부타디엔 14. 2-브로모프로판 15. 브롬화 메틸 16. 산화메틸렌 17. 석면 18. 수은 19. 스티렌 20. 시클로헥산 21. 아닐린 22. 아크릴로니트릴 23. 암모니아 24. 염소 25. 염화비닐 26. 이황화탄소 27. 일산화탄소 28. 카드뮴 29. 코발트 30. 폴타르피치 31. 톨루엔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34. 트리클로로메탄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포름알데히드 37. n-헥산 38. 황산	□해당 없음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측정데이터			
제 7 장 유해·위험물질 에 대한 조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법 108 조 영 85 조 규칙 147~150 조	신규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유해·위험성조사서 제출 및 제출면제 시 확인 실 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해당 없음 □위험성조사 및 보고서 제출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 험성 조사	법 109 조 규칙 115 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 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명령 접수 시 대응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 성 및 제출	법 110 조 영 86 조 규칙 156,157,159 조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법 제 104 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 104 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당 없음 □MSDS 제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13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 공	법 111 조 규칙 160 조	①MSDS 대상물질을 양도/제공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MSDS 를 제공 ②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제 110 조제 3 항 에 따라 변경된 MSDS 를 제공 ③MSDS 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한 자(제조/수입자는 제외)는 제 110 조제 3 항에 따른 MSDS 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MSDS 대상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에게 제공	■해당 없음 □MSDS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 부 비공개 승인 등	법 112 조 규칙 161 조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 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 117 조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2. 법 제 118 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20 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규칙 별표 21 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규칙 별표 22 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5 조제 2 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해당 없음 □검토 후, 필요 시 시행 (MSDS 비공개승인신청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 시 및 교육	법 114 조 규칙 167~169 조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자는 자는 다음의 조치 실시 -MSDS 대상물질을 취급장소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 게시 -작업공정 별로 다음사항이 기술된 관리요령 게시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다음사유 발생시, 취급 근로자에게 MSDS 교육 실시 및 기록 보존 1. MSDS 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MSDS 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없음 ■MSDS 관리 지침서에 반영 -취급장소에 MSDS 게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MSDS 교육 및 기록보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 시	법 115 조 규칙 170 조	①MSDS 대상물질을 양도/제공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당 없음 ■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제 7 장 유해·위험물질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법 117 조 영 87 조	①누구든지 다음(박스 내)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없음 □필요 시 고용노동관서 승인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14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에 대한 조치		규칙 172 조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 고 인정되는 물질 2. 제 105 조제 1 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 109 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제조금지물질 1. β-나프틸아민과 그 염 2.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3.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2% 이하인 것은 제외) 4.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5% 이하인 것은 제외) 5. 석면 6.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7. 황린 성냥 8. 제 1 호, 제 2 호, 제 5 호 또는 제 6 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 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 9.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같은 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규 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제외) 10.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 등 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할 수 있다. 1. 제조/수입/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은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 18 조제 1 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 1 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 등 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후 사용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법 118 조 영 88 조 규칙 173 조	①법 제 117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 지 아니한 물질 등 다음의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α-나프틸아민 및 그 염 2. 디아니시킨 및 그 염 3. 디클로로벤지딘 및 그 염 4. 베릴륨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 6.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7. 염화비닐 8. 골타르피치 휘발물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 10. 크롬산 아연 11. o-톨리딘 및 그 염 12. 황화니켈류 13.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또는 제 6 호부터 제 12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하인 것은 제외) 14. 제 5 호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 이하인 것은 제외)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해당 없음 □필요 시 고용노동관서 허가 후 사용			
제 7 장 유해·위험물질 에 대한 조치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기준 준수 등	법 119~124 조 영 89,90,94 규칙 175~ 185,488 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 은 다음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한 후 그 결 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 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 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물·시설 해체 사유 발생시 전문석면조사기관 및 전문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해체·제거 실시 -발생 시, 관련 서류 보존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15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8 장 근로자 보건관 리	작업환경측정	법 125 조 규칙 186~189 조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요구 시 입회 및 설명회 실시 가능 1)최초 : 1 회/6 개월 이상 2)노출기준초과 : 1 회/3 개월 이상 3)최근 2 회연속 노출기준 미만 :1 회/연 -노출기준 초과 공정 개선 실시 -작업환경측정결과 고용노동관서 제출/보존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측정결과 보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측정결과 고용노동관서 제출 -노출기준초과공정개선 실시			
	건강진단	법 129~133 조 규칙 195 조~199 200~212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이때, 근로자대표 요구 시 입회 및 설명회 실시 가능 1)일반건강진단 : 사무직(1 회/2 년), 현장근로자(1 회/년) 2)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 현장근로자 -건강진단 시기,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 규칙 등에 명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에게 설명 및 고용노동 관서에 제출/보존 -건강진단결과 필요 시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 실시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주기적인 건강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 보존 (일반건강진단결과표, 특수, 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 -유소견자 관리			
제 8 장 근로자 보건관 리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법 138 조 규칙 220 조	-사업주는 감염병/정신질환/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 2 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우려 질병에 걸린 사람(전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경우),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1)질병자 근로금지 2)산업보건의 의견에 따라 조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법 139 조 영 99 조	①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다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 일 6 시간, 1 주 34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금지. 예) 잠함 또는 잠수 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②사업주는 다음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절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실시 1. 갭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동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에 반영 1)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16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 8 장 근로자 보건관 리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법 140 조 영 100 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		■교육훈련 절차서에 반영 -유자격자에게 작업배정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제 10 장 근로감독관 등	근로감독관의 권한	법 155 조 규칙 235 조	「근로기준법」 제 101 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에게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명령 접수 시 이에 적극 협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법 157 조	①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의료법」 제 2 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 19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교육 실시		

	법규적용여부결정서(법규등록부)			표 준 번 호	법규-11	제 정 일 자	2013.08.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자(번호)	2025.05.30(7)	쪽 번 호	17 / 17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제 11 장 보칙	서류의 보존	법 164 조	사업주는 다음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table><tr><th>관련서류</th><th>보존기간</th></tr><tr><td>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회의를록(2년)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td><td>3년</td></tr></table>					관련서류	보존기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회의를록(2년)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년
관련서류	보존기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회 회의를록(2년)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년										